

[별표8] 공·능 촬영 및 장소사용 허가 관련 안전부의 기준(제24조, 제32조 관련)

구분	세 부 내 용	비고
목적	<p>이 기준은 공능유산분과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.)를 운영함에 있어 공능에서의 촬영·장소사용 허가에 관련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위원회의 운영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.</p>	
안전 구분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공능유적본부장은 위원회 운영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안전을 심의사항, 보고사항으로 구분하여 부의한다.</li> <li>2. 안전 구분은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.            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가. 심의사항 : 국가유산 보존·관리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촬영 및 장소 사용 신청 사항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(공통사항)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국보 및 보물인 전각 내부에서의 촬영 및 장소사용</li> <li>· 공개 제한지역에서의 촬영 및 장소사용</li> <li>· 촬영 및 장소사용 허가 사무와 관련된 주요 계획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</li> </ul> </li> <li>- (촬영허가)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촬영을 위해 입장하는 인원이 60명 이상일 경우</li> <li>· 크레인(20톤 초과) 등 대형장비(발전차는 제외) 반입이 필요한 경우</li> </ul> </li> <li>- (장소사용허가)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공연을 목적으로 한 100㎡ 이상의 무대설치</li> <li>· 참여인원 300명 또는 관람석 150석 이상 규모의 행사</li> </ul> </li> </ul> </li> <li>나. 보고사항 : 심의대상을 제외한 아래의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국가유산청장 또는 그 소속기관장이 주최·주관하는 주요 촬영 및 장소사용 관한 사항</li> <li>- 연도별로 수립하는 공능 활용사업에 관한 종합 계획</li> <li>- 정부 및 공공기관이 주최·주관하는 주요 촬영 및 장소사용 허가 사항</li> </ul> </li> </ol> </li> <li>3. 보고사항은 다음 차시 위원회에 사후보고 할 수 있다.</li> <li>4. 보고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으로 본다.</li> </ol>	